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50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 코드: AF683)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50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약 30%를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360	0.900	1.330	1.383	145	296	451	779	1,7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910	0.450	1.010	0.933	98	200	306	531	1,177
(주 1) ‘1,000 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4.3.29 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4.4.29
			23.4.30 ~24.4.29		22.4.30 ~24.4.29		21.4.30 ~24.4.29		19.4.30 ~24.4.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03		-1.81		-0.89		0.69		1.79
	비교지수 (%)	2013.4.30.	4.40		2.61		0.54		2.54		2.49
	수익률 변동성 (%)		6.64		7.16		6.32		7.68		6.54
(주 1) 비교지수 : KIS 국고채 1~2 년×80% + KOSPI×2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운용펀드 기준)											

		니다.					
	증권차입 매도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에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지만, 차입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매수전략만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5 시 30 분 경과후 :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 15 시 30 분 경과후 :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table><tr><th>과세 시기</th><th>세율</th><th>세액 공제</th></tr><tr><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td><td>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td><td>(2023. 1. 1.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td></tr></table>	과세 시기	세율	세액 공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
과세 시기	세율	세액 공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	(2023. 1. 1.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4. 8. 29.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S-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